

내부감사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8. 8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각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업무범위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기관 및 구성)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공인회계사
2.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3.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본 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보조하는 조직을 설치하며, 동 조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이 구성한다.

제3조(독립의 원칙) 감사인은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감사인의 의무)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감사인으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2.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감사의 범위)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본교 및 그 부속기관의 회계에 관한 사항
 2. 주요계약에 관한 사항
 3. 본교 각 부서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전항 제1호의 회계감사에는 수입과 지출, 재산(물품, 유가증권등을 포함한다)의 취득, 보관, 관리 및 처분등의 감사를 포함한다.

제6조(감사의 시기) ① 감사는 정기감사, 특별감사, 일상감사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업무에 관하여 실시한다.

4-2-5 내부감사 규정

- ③ 감사인은 총장의 지시나 각 기관장의 의뢰에 따라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일상감사는 본교의 업무 및 회계와 관련한 중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며, 실시 전에 총장의 검토 및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한다.

제7조(감사의 방법) 감사인은 각 부서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 외에 필요에 따라 실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.

제8조(감사반의 구성) ① 감사반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제2조 제2항에 정한 감사조직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해당 인력만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차출된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.

- ② 전 항의 타 부서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는 감사인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) 서면 혹은 현장감사에 임한 부서는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- 1. 각종 회계장부와 물품수급대장의 제출
- 2. 계산서, 증명서 및 해명서의 제출
- 3. 각종 결의서 및 품의서의 열람
- 4. 창고, 금고, 문부 및 물품의 봉인
- 5. 각종 설치물, 집기, 비품, 소장품의 제시
- 6.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

제10조(감사 보고서)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보고서에 따라 징계 또는 유책의 판정을 위하여 인사기관이 따로 요청할 때에는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감사보고서의 내용) ① 정기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제기한다.

- 1. 학교의 세입·세출에 따른 결산의 확인
 - 2. 학교의 규정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에 관한 사항
 - 3.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
 - 4.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결과 확인
 - 5. 기타 감사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정기감사를 제외한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보고서에는 전 항의 사항에 관한 순서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.

제12조(감사결과 처리)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전 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감사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시정 요구사항에 관계자의 징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

4-2-5 내부감사 규정

하며, 변상요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변상책임자,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